

# 環境保全法

公布：1977. 12. 31. 法律3078號  
改正：1979. 12. 28. 法律3213號  
改正：1981. 12. 31. 法律3505號

##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危害를 豫防하고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適正하게 管理·保全함으로써 現在와 將來의 모든 國民이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이라 함은 自然의 狀態인 自然環境과 사람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財産의 보호 및 動物·植物의 生育에 필요한 生活環境을 말한다.
2. “汚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汚染·水質汚染 또는 土壤汚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燒·合成·分解時 또는 物理的 性質에 의하여 發生하는 氣體物質을 말한다.
4. “粒子狀物質”이라 함은 物質의 破碎·選別·堆積·移積 기타 機械的 處理 또는 燃燒·合成·分解時 發生하는 固體狀이나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로서 粉塵·煤煙·검댕 및 液滴 등을 말한다.
5. “粉塵”이라 함은 大氣중에 浮遊하거나 飛散降下하는 微細한 固體狀의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6. “煤煙”이라 함은 燃燒時 發生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

狀物質을 말한다.

7. “검댕”이라 함은 燃燒時 發生하는 遊離炭素가 凝結하여 粒子의 直徑이 1 미크론 이상인 粒子狀 物質을 말한다.
8. “惡臭發生物”이라 함은 사람의 日常生活에 不快感을 주는 黃化水素·石炭酸 또는 그 化合物 기타 刺激性 있는 氣體性物質을 말한다.
9.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廢棄物이 混入되어 그대로 使用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 “騒音”이라 함은 機械·器具 등에서 發生하는 強한 音を 말한다.
11.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의 사용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強한 흔들림을 말한다.
12. “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 水質 土壤을 汚染하거나 騒音, 振動, 惡臭 등으로 國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에 被害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汚染物質 등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單具·기타 物體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13. “特定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健康·財産이나 農水產物 등의 生育에 직접 또는 間接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物質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14. “防止施設”이라 함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 또는 騒音·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15. “産業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잔재물·廢油·廢酸·廢알칼리·廢고무·廢合成樹脂 등 廢棄物로서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排除)** 이 법의 規定은 原子力法에서 정하는 放射性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防止에 關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環境基準)** ① 環境廳長은 快速한 環境을 保全하고 環境汚染으로부터 사람의 健康을 보호함에 필요한 環境基準을 設定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設定項目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特殊性을 勘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第1項의 基準에 불구하고 別途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第4條의 2(環境基準의 維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適切히 維持되도록 環境에 關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樹立 및 事業의 執行에 있어서 다음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環境條件 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事前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에 適正配分

**第5條(環境影響評價 및 協議)** ① 都市의 開發, 産業立地 및 工業園地의

造成, 에너지開發, 港灣建設, 道路建設, 水質源建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環境保全에 影響을 미치는 事業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는 行政機關·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計劃이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評價하고 이에 關하여 미리 環境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環境廳長은 第1項의 環境影響評價를 위하여 필요한 研究·技術開發·要員養成 등의 措置를 하고, 國內外의 關聯情報 및 資料를 蒐集·保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거나 用하게 할 수 있다.

**第5條의 2(環境影響評價의 代行)**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를 實施하는 機關의 長은 그 計劃에 關한 環境影響評價를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이 指定·公告하는 國·公立研究機關 政府出捐研究機關 등 環境影響評價能力이 있는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6條(常時測定)** ① 環境廳長은 全國의인 環境汚染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環境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は 당해 管轄區域내의 環境汚染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環境汚染度를 測定할 수 있다.

**第6條의 2(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環境廳長은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범위 및 區域 등을 明示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官報”는 “市·道 公報”로 본다.

**第6條의 3(土地 등의 收用 및 사용)**

①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6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測定網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 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6條의 4(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第6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 許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の 許可
-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の 許可
- 3.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的 占用 또는 사용의 許可

②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6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미리 關係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7條(特別對策地域)**

① 環境廳長은 環境汚染 또는 自然生態界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하고 管轄 市·道知事に 대하여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

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하여 이를 施行할 것을 指示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指示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地域내에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8條(特別對策地域내의 土地 이용 등의 制限)**

環境廳長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地域내의 土地이용과 施設設置를 制限할 수 있다.

**第9條(自然環境의 保全)**

① 環境廳長은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하여 生物의 生育環境 또는 自然生態界에 대한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 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특별히 保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自然環境保全地區로 指定할 것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③ 環境廳長은 自然環境保全地區 안에서 自然生態界의 保全이 특히 필요한 地域을 自然生態界保全區域으로 指定하고, 自然生態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關係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 指自의 對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環境保全委員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 등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 環境保全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에 필요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廳長 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市·道知事 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각각 둔다.

**第12條(環境研究機關의 設置)** 政府는 環境保全에 필요한 試驗·調查研究·技術開發·資料分析 및 要員의 訓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研究機關을 設置한다.

**第13條(大氣 및 水質의 影響圈別 管理)** 環境廳長은 環境汚染에 관한 狀況을 把握하고 그 防止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行政管轄區域에 불구하고 大氣汚染의 影響圈地域 또는 水質汚染의 水系別水域을 管理할 수 있다.

## 第2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

**第14條(排出許容基準)** ① 排出 施設에서 발생하는 汚染物質과 惡臭發生物 및 機械器具 등에서 발생하는 騒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② 環境廳長은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別對策地域에 대하여 環境汚染防止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③ 環境廳長은 第2項의 排出許容基準에 불구하고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維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特別對策地域내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第15條(排出施設의 設置許容)**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排出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을 第14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하게 하기 위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의 3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排出施設의 能機 및 工程上 汚染物質 등이 항상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는 것으로 環境廳長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第2項의 防止施設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5條의 2(共同防止施設)** ① 工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의 共同처리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당해 汚染物質 등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② 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 排出施設管理人的 任命 기타 共同防止施設의 設置·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5條의 3(環境技術監理團)** 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設置에 따르는 技術檢討 및 防止施設의 運營指導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環境廳에 環境技術監理團을 둔다.

② 環境技術監理團의 構成·業務 및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6條(使用開始의 申告)** ① 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을 設置完了한 때에는 設置完了한 날로부터 15日 內에 保製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에게 申告하고 指定한 期日 內에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適合判定을 받은 후가 아니 면 그 施設을 利用하여 操業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의 2(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① 事業者는 操業行爲를 할 때에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 質 등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排出施設 及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② 環境廳長은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 施設 及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與否를 확인할 수 있는 器機의 附着 等 排出 施設 及 防止施設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것을 命할 수 있다.

**第17條(改善命令등)** 環境廳長은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適合判定 을 받아 操業中인 排出施設에서 排出 되는 汚染物質의 정도 또는 騒音·振 動의 정도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第16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가 履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당해 事業者 에게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改善·代替 기타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第18條(操業停止등)** ① 環境廳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

거나 期間내에 改善하였으나 檢査結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 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 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의 操業停止 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大氣汚染·水質汚染·騒音·振動 등으로 인한 國民保健上의 危害나 生活環境의 被害가 急迫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制限·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즉시 命할 수 있다.

**第19條(施設의 移轉命令 등)** ① 環境廳長은 工場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 改善命令을 하여도 당해 事業場의 位置에서는 이를 履行할 수 없다고 判斷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健 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場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第19條의 2(排出賦課金)** ① 環境廳長은 事業者가 第17條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移轉命令 을 받은 후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汚染物質等을 排出하면서 操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を 納付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은 第62條의 2의 環境汚染防止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③ 排出賦課金은 排出許容基準의 超過率排出期間·汚染物質 등의 種別 및 發生量에 따라 算定되되, 그 算定基準·納入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 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排出賦課金の 徵收 및 滯納處분에 關하여는 國稅徵收法의 例에 의한다.

**第20條(許可의 取消)** 環境廳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때

**第21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環境廳長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排出施設의 操業停止 또는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第22條(自家測定)** ① 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사용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環境廳長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記錄을 備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自家測定 및 指定 등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2條의 2(環境汚染公定試驗法)** 環境廳長은 汚染物質 등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正確 및 統一을 維持하기 위하여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을 定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23條(排出施設管理人)** ① 事業者는 그 排出施設의 種類와 機能에 따라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排出施設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 및 資格基準·管理內容·遵守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23條의 2(排出施設管理人의 變更命令)** 環境廳長은 排出施設管理人이 排出施設의 管理를 소홀히 하거나 遵守事項 違反 기타 違法行爲를 한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24條(보고 및 檢査 등)** ①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必要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5條(環境監視員)** ①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와 기타 環境에 關한 監視事務를 하기 위하여 環境廳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環境監視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監視員의 任免·職務·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章 大氣保全

**第26條(大氣汚染의 規制)** ① 環境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에 있어서 各 事業場으로부터 大氣중에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 및 財産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內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基準·項目·기타 필요한 事項은 環境廳長이 定한다.

**第27條(燃料使用에 關한 措置)** 環境廳長은 大氣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특히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場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燃料의 사용을 制限하거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7條의 2 (燃料用油類의 硫黃含有基準)**

① 環境廳長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燃料用油類의 種類制로 硫黃의 含有基準을 定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油類의 硫黃含有量이 第1項의 基準을 초과한 때에는 그 油類의 製造業者·販賣業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그 油類의 生産·販賣 및 使用을 制限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28條(自動車 및 重機排出가스의 許容基準)**

① 環境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自動車 및 重機(이하 自動車라 한다)로부터 大氣 中에 排出되는 가스·煤煙 등의 排出許容基準을 自動車種類別로 定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容基準의 범위내에서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에 關하여 필요한 細部事項은 交通部長官 또는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廳長이 定한다.

**第29條(自動車の 使用 또는 通行統制)**

① 環境廳長은 自動車로부터 排出되는 가스·煤煙 등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使用者에 대하여 煤煙·가스 등의 發散防止裝置의 整備代替 또는 自動車使用의 禁止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自動車로부터 排出되는 가스가 사람의 健康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地域의 自動車 通行을 統制할 수 있다

**第30條** ① (自動車製作에 있어서의 排出濃度) 自動車を 製作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動車排出가스濃

度基準에 적합하도록 製作하여야 한다. 輸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自動車排出 가스濃度에 의 適合舊否에 關한 檢査方法은 環境廳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31條(自動車燃料 添加劑의 規制)** 環境廳長은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의 添加劑로 因하여 人體에 顯著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添加劑의 使用을 規制할 수 있다.

**第32條(惡臭發生物의 燒却금지)**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地域내에서는 누구든지 적합한 燒却施設이 없이는 고무皮革合成樹脂 또는 廢油 등 惡臭가 발생하는 物質을 燒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章 騒音·振動 등 規制**

**第32條의 2 (生活騒音의 제한)**

環境廳長은 住居生活의 靜穩을 보호하기 위하여 深夜에 있어서의 騒音이나 擴聲器 등에 의한 騒音에 關한 生活騒音 規制基準을 定하고 그 基準에 따라 騒音을 제한할 수 있다.

**第32條의 3 (交通騒音防止施設등)**

環境廳長은 自動車專用道路의 新設 또는 擴張으로 因하여 住居生活의 靜穩이 侵害된다고 判斷될 때에는 道路管理機關에 대하여 騒音防止施設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第32條의 4 (自動車騒音基準)**

自動車を 製作 또는 運行하는 者는 環境廳長이 商工部長官 및 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하는 自動車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制作 또는 運行하여야 한다. 輸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33條(規制地域의 指定)**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

하여 騒音振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防止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騒音規制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が 第1項의 解定에 의하여 騒音規制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34條(騒音規制基準)** ① 市·道知事は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騒音規制地域을 指定하는 때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 當해 地域에 대한 騒音規制基準을 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基準을 設定하거나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4條의 2(自動車騒音의 統制)** 市·道知事は 騒音規制地域내에서 自動車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騒音의 規制基準을 초과할 때에는 그 使用者에 대하여 自動車の 消音器 및 騒音防止裝置의 整備·代替 또는 그 自動車 사용의 禁止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地域내에서 特定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は 特定工事로 인한 騒音이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의 規制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作業時間의 調整·防止施設의 設置 등을 命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種類·申告·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 第5章 水質 및 土壤의 保全

**第36條(水質汚染의 規制)** ① 環境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

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에 있어서 各 事業場으로부터 公共水域에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해 區域內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基準·項目·기타 필요한 事項은 環境廳長이 定한다.

**第37條(投棄 또는 毀損 등 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定당한 事由없이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特定有害物質 또는 産業廢棄物을 버리는 行爲
2. 動物의 死體·糞尿·鹿芥 또는 汚泥 등을 버리는 行爲
3. 自然環境毀損保存을 위한 施設物을 破損하는 行爲

② 環境廳長은 特定有害物質, 産業廢棄物·動物의 死體, 糞尿 또는 鹿芥 등의 汚染物質로 인하여 河川 또는 公有水面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汚染物質의 占有者에게 그 除去를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汚染物質을 排出한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者에게 命하여야 한다.

**第38條(公共水域의 占有 및 埋立 등에 의한 汚染防止)** ① 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主務官廳은 公共水域의 環境汚染으로 인한 保健衛生上 危害를 防止함에 필요한 條件을 붙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條件·內容, 危害防止方法



등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下水終末處理場 등의 維持·管理) 下水, 廢水 또는 糞尿終末處理場을 設置運營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放流水水質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0條**(公共施設 등의 整備指示)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로 하여금 下水道廢棄物 處理施設 등의 設置·整備 등을 指示할 수 있다.

**第41條**(農耕地의 汚染防止) 市·道知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物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 特定有害物質에 의한 農耕地(草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耕地에 流入하는 用水의 水質基準을 정하거나 覆土·削土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2條**(農水産物の 栽培制限) ① 市·道知事は 特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 土壤 또는 水域이 特定有害物質에 의하여 汚染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栽培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汚染地域에 대한 農水産物 등의 栽培를 制限하거나 그 汚染地域에서 生産된 汚染된 農水産物을 廢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の 栽培制限 또는 廢棄로 인하여 입은 損害에 대하여는 特定有害物質을 排出한 者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42條의 2**(農藥殘留許容基準) ① 環境廳長은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 중 農藥殘留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 環境廳長은 水質·土壤 또는 農作

物 중에 農藥殘留量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農藥을 製造하는 者에 대하여는 製造의 금지·變更 또는 그 製品의 폐기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것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第6章 費用負擔

**第43條**(事業者의 費用負擔) ① 事業者 기타 汚染의 原因을 직접 惹起하게 한 者(이하 “原因者”라 한다)는 그 事業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이하 “施行者”라 한다), 實施하는 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여야 한다.

② 施行者가 實施하는 環境汚染防止 事業의 種類·規模 原因者의 費用負擔·기타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施行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을 第62條의 3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事業團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第44條**(原因者의 負擔金額)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因者의 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의 金額은 各原因者에 대한 事業活動의 種類·規模 및 汚染物質의 排出 程度 등을 基準으로 하여 負擔總額을 配分한 金額으로 한다.

**第45條**(費用負擔計劃) ① 施行者가 環境汚染防止事業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諮問을 받아 費用負擔計劃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計劃의 樹立 및 決定·기타 필요한 事

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6條(強制徵收)** ① 原因者가 負擔金を 納付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期限은 적어도 10日 이상이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內에 負擔金を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 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第7章 防止施設業

**第47條(防止施設業의 登錄)**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8條(欠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防止施設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49條(登錄의 取消 등)** ① 環境廳長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第4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登錄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 이상 休業한 때
3. 不正한 手段으로 登錄을 한 때
4.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防止施

設의 施工을 不實하게 한 때

5.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舊한 때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會計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契約締結에 관한 資格이 정지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以에 違反한 때

② 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防止施設業者에 대하여 聽聞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正當한 事由없이 聽聞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聽聞을 하지 아니하고 相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49條의 2(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의 繼續工事)** ①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 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그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指定하여 工事を 管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設計 또는 施工을 完了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 第8章 産業廢棄物處理

**第49條의 3(産業廢棄物의 처리)** ①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는 그 事業活動에 따라 생기는 産業廢棄物을 스스로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 保管·運搬 처리하여야 하며, 再生·이용 등으로 産業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 抑制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

의 保管·運搬·처리의 方法과 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③ 環境廳長은 事業場의 經營者가 産業廢棄物을 保管·運搬·처리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方法 또는 基準에 違反한 때에는 그 經營者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49條의 4(廢棄物의 回收措置 등)** ①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는 物件의 製造·加工·販賣 등에 있어서 그 製造·加工·販賣 등에 關連되는 製品·容器 등이 廢棄物로 될 경우에 그의 回收 및 처리가 容易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容器 등에 特定有害物質이 含有되어 있거나 多量으로 製造·加工·販賣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品製·容器 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의 그 回收 및 適正한 處理方法 등을 告示하고 그 製品·容器 등의 製造·加工·販賣者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50條(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 ① 産業廢棄物의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處理業者”라 한다)는 産業廢棄物처리 對象, 處理方法 등에 關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③ 處理業者는 産業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他人에게 委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産業廢棄物을 保健社會部

令이 정하는 運搬方法에 의하여 事業場으로부터 産業廢棄物의 處理場所까지 運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은 處理業者의 許可欠格事由 및 그 許可의 取消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1條(産業廢棄物의 폐기제한)** ①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와 處理業者가 産業廢棄物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4條,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처리 후에 生成된 産業廢棄物 또는 처리되지 아니한 産業廢棄物을 營業場所 외의 場所로 運搬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營業場所 및 運搬豫定地를 管轄하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第52條(産業廢棄物의 終末處理)** ① 事業者가 産業廢棄物을 終末處理하는 경우와 處理業者가 産業廢棄物의 처리로 인하여 生成되는 産業廢棄物을 終末處理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方法과 基準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52條의 2(産業廢棄物 終末處理施設)**

①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 또는 處理業者는 産業廢棄物의 終末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 終末處理 施設의 設置와 終末處理方法에 關한 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③ 環境廳長은 産業廢棄物 終末處理 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設置者에 대하여 施設의 改修·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命할 수 있다.

**第52條의 3 (産業廢棄物의 輸入制限重請)**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産業廢棄物의 輸入制限을 商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 第9章 紛爭調停 및 被害賠償

**第53條(紛爭의 調停申請)** ① 環境汚染으로 인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는 市·道知事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申請을 받은 市·道知事は 그 申請內容이 第5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調停委員會의 管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10日 내에 申請書를 環境廳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調停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4條(調停委員會)** ① 環境汚染으로 인한 紛爭을 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廳長 所屬下에 中央環境 紛爭調停委員會(이하 "中央調停委員會"라 한다)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 紛爭調停 委員會(이하 "地方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15人以上 20人 이하로 하되 公益을 代表하는 者와 産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중에서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が 任命 또는 委囑한다.

③ 調停委員會의 構成·運營·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調停委員會의 機能)** ① 中央調停委員會는 2이상 의 市·道에 걸치는 紛爭과 地方調停委員會에서 스스로 調停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決定하여 移送된 紛爭을 調停한다.

② 地方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調停委員會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하는 紛爭을 調停한다.

**第56條(調査委員의 指名)** 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이 있을 때에는 調停委員중에서 5人 이내의 調査委員을 指名하여야 한다.

**第57條(事實調査 등)** ① 關係當事者間의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 대하여 出席하여 陳述할 것을 要求하거나 관계 서류를 閱覽 또는 公務所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거나 관계 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② 調査委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栗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58條(調停委員會의 義務)** ① 調停委員은 紛爭의 實情을 詳細하게 調査하고 公正하게 調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調停委員은 紛爭調停 중에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9條(調停效力)** ① 調停委員會는 紛爭의 調停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내에 調停案을 作成하여 當事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에 대하여 當事者가 이를 受諾한 때에는 調停委員全員은 調停調書를 作成하고 當事者와 함께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調書는 民事訴訟法 第206條의 規定에 의한

和解調査의 效力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 第60條(生命 身體의 被害에 대한 過失 責任)** ① 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② 事業場 등이 2個이상 있을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서 排出된 汚染物質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各 事業者는 連帶하여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의 賠償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民法 이외의 法律에 따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 第10章 補 則

**第60條의 2(관계機關의 協調) 環境廳** 長은 이 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것을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害虫驅除方法의 改善
2. 保安林의 指定
3. 禁獵區의 設定
4. 狩獵의 規制 및 團束
5. 農藥의 사용規制
6. 農業用水의 사용規制
7. 工業整備特別區域의 指定
8. 燃料의 品質改善 또는 代替
9. 暖房機器의 改善
10. 自動車燃料의 代替
11. 綠地地域·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指定

12. 下水處理場의 設置
13. 公共水域의 浚渫
14. 都市開發制限區域의 指定
15. 産業施設設置로 毀損된 國土의 原狀復舊
16. 道路, 鐵道設置時 切開地의 整備
17. 河川占用許可의 消河, 川工事의 施行中止·變更 또는 그 工作物 등의 移動이나 除去
18. 公有水面占用 및 사용許可의 取消·公有水面사용의 政지·制限 또는 施設物 등의 改築·除去
19. 老朽車輛의 엔진의 變更 또는 代替
20. 洗劑의 代替
2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第60條의 3(檢査用 機械器具의 型式承認)** ① 自動車의 排出가스, 騒音 등에 관한 檢査用 및 整備用機械·器具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관하여 環境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型式承認을 받은 者가 그 機械·器具를 製作 또는 輸入할 때에는 확인 檢査를 받아야 하며, 확인 檢査를 받은 機械·器具를 使用하는 者는 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第2項의 확인 檢査 및 精度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廳長이 定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지 아니한 機械·器具는 이를 販賣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第61條(環境保全協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查研究·技術開發·啓蒙事業 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61條의 2 (環境要員의 教育訓練)**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機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및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이하 이 條에서 “環境要員”이라 한다)을 僱傭한 者는 소속 環境要員에 대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年마다 1회 이상 環境廳長이 指定하는 訓練機關에서 訓練을 履修하게 하여야 한다.

**第62條(國庫補助)** 政府는 다음 各號의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을 위한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
2.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 및 環境研究 機關의 調查·研究·技術開發 및 啓蒙事業 등에 所要되는 經費
3. 事業者가 防止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한 資金에 대한 利子

**第62條, 2 (環境汚染防止基金)** ① 環境汚染防止事業과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 및 事業者의 防止施設投資에 대한 長期低利融資를 위한 財定을 확보하기 위하여 環境汚染防止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2. 政府 및 政府이외의 者의 出捐金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受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第62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이

이를 管理·運用한다.

**第62條의 3 (環境汚染防止事業團)** ① 環境汚染防止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을 設立한다.

② 環境汚染防止 事業團은 法人으로 한다.

③ 環境汚染防止事業團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63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環境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市·道知事 또는 環境側定管理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64條(手數料)**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65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章 罰 則

**第6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여 操業을 하거나 第16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2.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適合判定을 받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8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違反하여 操業을 계속한 者
5. 第21條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操業을 계속한 者

6. 第 30 條 또는 第 32 條의 4 의 規定에 違反하여 自動車를 製作하거나 輸入한 者

**第6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6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第 24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虛僞로 하거나 關聯公務員의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
3. 第 47 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施工을 한 者
4. 第 50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産業廢棄物의 處理業을 한 者
5. 第 52 條의 3 또는 第 58 條 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6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2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22 條 第 1 項·第 32 條·第 37 條 第 1 項·第 50 條 第 3 項·第 51 條 第 1 項·第 52 條 第 1 項·第 52 條의 2 第 1 項 또는 第 60 條의 3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 27 條·第 27 條의 2 第 2 項·第 31 條·第 34 條의 2·第 35 條 第 2 項·第 37 條 第 2 項·第 42 條 第 1 項·第 49 條의 3 第 3 項·第 49 條의 4 第 2 項 또는 第 52 條의 2 第 3 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 32 條의 2 또는 第 34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騒音規制 基準에 違反한 者

**第6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1. 第 23 條 第 1 項·第 35 條 第 1 項 또는 第 51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 60 條의 3 第 4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69條의 2(過怠料)** 第 23 條의 2 또는 第 61 條의 2 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7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第 66 條 내지 第 69 條의 規定에 違反하는 罪를 犯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處한다.

##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78 年 7 月 1 日부더 施行한다.

**第 2 條(廢止法律)** 이 法 施行과 동시에 公害防止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公害防止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에게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 3 條(排出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公害防止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 15 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 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 法 施行당시 公害防止法 第 5 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完了申告를 한 者는 이 法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당시 公害防止法 第 6 條 내지 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移轉命令·操業停止 또는 許可

取消의 處分을 받은 者는 이 法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의 命令·移轉命令 또는 許可取消의 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당시 公害防止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害防止管理人은, 이 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인으로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日로부터 3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⑤ 이 法 施行 당시 公害防止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操業중인 者는 이 法 施行 후 6月 이내에 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同 期間 내에는 이 法 第21條 및 第66條 第5號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自動車에 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運行중인 自動車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 日로부터 1年 이내에 이 法 第28條의 規定에 排出가스의 許容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이미 製作承設된 自動車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排出가스 濃度基準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 附 則(1979. 12. 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중건의 規號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한 行政處分 기타 行爲는 이 法에 의하여 環境廳長이 한 行政處分 또는 行爲로 보고, 保健社會部長官에 대하여 한 行爲는 環境廳長에 대하여 한 行爲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道路運送車輛法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自動車의 排出가스, 騒音 등에 관한 檢査用 및 整備用의 機械·器具는 이 法에 의하여 型式承認·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이 法 施行 고 따른 관련法律의 整備) ① 農藥管理法 등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第1項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다. 다만, 有毒性農藥의 公正規格을 設定,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國土建設綜合計劃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 第3項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內務部長官, 國防部長官, 商工部長官, 農水產部長官, 保健社會部長官, 交通部長官 및 環境廳長을 포함한 8人 이내의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企劃調整室長.

③ 長下水道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第3項 내지 第5項 중 “保健社會部長官”을 “環境廳長”으로 하고, 同條 第6項을 削除한다.

### 附 則(1981. 12. 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의 2, 規定은 第62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基金이 設置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이미 設置된 共同防止施設은 第1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로 보되 이 法 施行 후 1年 이내에 第1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